
서강대 K교수 성폭력 사건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서강대학교측의 행정소송을 촉구합니다.

일시 : 2004년 2월 23일 (월) 11시 00분

장소 : 서강대학교 본관 앞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연대회의>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서강대학교 여성위원회,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대학교 인문대여성모임연대, 서울대학교 사회대여성주의연대, 서울대학교 법대 여성주의로 놀자! 놀이터, 서울대학교 농생대여성연대 모임,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주이쌍스,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문과대여성주의모임 '모반', 연세대학교 사회대공동체 '비욘드',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 * *

순 서

1. 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촉구합니다.
(P.2)
2.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재심의 결정에 부쳐. (P.3)
3. 대학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지지하고, 촉구합니다. (P.5)

* * *

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촉구합니다.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교성절연)는 대학 내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대학 여성단위 등이 모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교성절연은 가해교수를 구제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의에 대한 문제제기, 각 대학 반성폭력 학칙(규정)의 보완, 각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조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예방교육 실시 요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강대에서도 최근 잇따라 두 건의 교수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의 K교수 성폭력 사건과 2003년의 국문과 H교수 성폭력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K교수 사건의 경우, 학교 측은 지난한 해결 과정 끝에 교수의 2차가해를 인정하여 가해교수에게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문과 H교수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교수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가해교수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육부 산하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H교수의 징계가 파면에서 파면 취소로, K교수의 징계가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성절연은 재심의에 의해 낮춰진 징계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심의 제도가 더 이상 가해교수의 구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끊임 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심위가 내린 징계가 아닌, 처음에 학교 측에서 내린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처음 결정이 번복되어 버린 서강대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립대 국문과 J교수 성폭력 사건은 재심위가 기각되어 기존의 해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서강대에서 있었던 교수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맥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시립대 사건에만 강경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교수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재심위가 갖는 문제점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론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에 행해진 서강대 H교수 사건이나 K교수 사건의 재심위는 그 결과가 부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학내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명목 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내에 교수성폭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뿌리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교성절연은 서강대 측이 이번 두 사건을 통해 교수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렸던 징계의 수위도 학교의 적극적인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서강대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도중에 멈추지 말고, 부당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를 촉구합니다. 학교 측은 재심위 결과가 나온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교수 성폭력 사건의 재심위 결과가 나왔던 날은 12월 1일이니, 이번 달 안에 조속히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H교수의 사건도 재심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파면이 취소된 이상 징계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므로 학교에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서강대에서 K교수 성폭력 사건의 재심위 결과에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교수성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재심의 결정에 부쳐.

지난 1월 19일, 성폭력 가해 교수인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 제기한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는 이전에 제기되었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의 성폭력 사건이나,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 성폭력 사건보다 진일보한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까지 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재심의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성폭력 가해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학습활동을 침해한 교수가 재심위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가해 교수가 학교에 복직되는 것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일이었는가? 이는 오히려 피해 학생의 생존권과 수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 내의 자체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징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단지, 이제야 뒤늦게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전의 재심의 결정으로 성폭력 가해 교수들이 학교로 다시 복직한 동국대나 서강대 사건들의 경우도 시립대 사건과 동일한 맥락의 교수 성폭력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나 서강대 사건들에 비해 시립대 사건에 강경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갑자기 재심위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성인지적 관점이 생겨났는가? 이는 모두, 여론의 강한 압박의 결과였을 뿐이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지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 재심의 발표가 나기 전부터 지속적인 운동(기자회견, 결의대회,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고, 지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재심의 발표가 난 1월 19일 날도 재심위 건물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또한 각 학교의 학생 단체들은 지난 12월 달부터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게다가 지난 12월 17일에는 MBC PD수첩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을 다룸으로써, 이제까지의 재심의 결과는 문제가 많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여론 조성으로 인하여, 재심위는 다시 한 번 더 성폭력 가해 교수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J교수의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재심위가 얼마나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반복되었던 재심위의 문제점이 단지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J교수의 해임징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 사건의 경우, 해임 결정에 불복한 가해자가 재심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되었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는 재심의를 통해 파면이 파면취소로, 같은 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는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이들은 학교에 복직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생존권의 침해와 수많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의 침해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심위는 이제까지 올바르게 못했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의 재심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연 재심위가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기구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의논해봐야 할 문제이다. 재심위는 교원이 권력기구인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심의하여 징계가 부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가해교수가 자신의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가해교수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심위가 가해 교수를 보호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심위는 일방적으로 재심의를 청구한 교수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기본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재심의의 적합한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못한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서 겪게 된 피해 학생과 그 학교 학생들의 권리 침해를 인지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K교수,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교수,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K교수의 재심의 결정 등, 올바르게 못한 재심의 결정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3.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의의 적합한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

대학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지지하고, 촉구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솔직히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한해에 32만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우리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성폭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이라는 신성한 공간에서 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 폭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사실 이전에, 성폭력이 어떻게 이처럼 ‘용인’되고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학사회의 이러한 용인과 보호는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 왔습니다. 교수 성폭력의 경우, 피해학우가 어렵게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에도, 대학사회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차원에서의 징계 내용의 대부분이 처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일회적이거나 미약한 처벌에 머물러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은 대학 강단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재차 가능케하는, 심각한 문제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해왔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강대학교의 K교수에 대한 해임조치와 H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는, 서강대학교가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대학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보다 발전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학 강단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성폭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침해되어지는 학생들의 성적의사결정권과 학습권을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12월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내려진 K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의 철회 결정은, 교수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학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대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들, 교수, 그리고 여성단체들의 목소리와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성폭력사건처리문제 공동대책위원회(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동대위)’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강대에게 다음과 같은 지지와 촉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대학내 교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피해 학우 및 일반 학우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서강대학교의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2. 서강대학교는 이번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현재 가능한 방법인 '행정소송'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판결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 시켜내고, 서강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피해 학우 및 일반학우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본 교원징계재심문제대책공대위는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피해학우 및 학생 및 교수, 단체들의 이러한 의지 및 노력에 역행하는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 갈 것을 밝힙니다. 더불어 교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서강대학교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임을 또한 밝힙니다.

대학내 성폭력,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애초에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견지해가지 않을 때, 서강대학교 또한 대학 강단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용인,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본 공대위는 서강대학교가 우리사회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대학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학습권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직한 대학의 위상을 만들어가 줄 것임을 믿습니다.

2004. 2. 23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전국여교수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